

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일
국립고궁박물관장

1. 최종합격자

| 직급 (직종) | 채용분야 | 응시번호 | 성명 | 휴대폰 뒷자리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
| 기간제 근로자 (연구원) | 교육 운영 | 2 | 설○희 | 9967 |
| | | 5 | 이○아 | 0405 |

2. 임용일 : 2023. 6. 12.(월) (예정)

3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가. 제출기한: 2023. 6. 8.(목)까지 (기한엄수)

나. 제출서류

-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(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)
-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(붙임1)
*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반드시 제출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-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- ④ 최종학력증명서
- ⑤ 결격사유확인서 (붙임2)
- ⑥ 공정채용 확인서 1부 (붙임3)
- ⑦ 반명함판(3×4cm) 사진 이미지 파일(jpg) * 이미지 파일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
- ⑧ 경력증명서 각 1부
- ⑨ 통장사본 1부
- ⑩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다. 접수처: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채용 담당자 앞

- 주소 : (03045)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

4. 공지사항

가.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
나. 신원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 02)3701-7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2. 결격사유확인서 1부.
3. 공정채용 확인서 1부. 끝.

(붙임 1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근로계약 및 인사업무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| 연번 | 행정정보명 | 연번 | 행정정보명 |
|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|
| 1 | 주민등록표 등·초본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(붙임 2)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 . . .

확인자:

(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